# 투자일임계약서

년 윌 일

고 객:

회 사 :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

## 투자일임계약서

(이하 "고객" 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(이하 "회사" 이라 한다)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(이하 "계약자산" 이라 한다)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 1 조 (목적)

회사는 고객의 계약자산의 운용에 관해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한다.

#### 제 2 조 (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)

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중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것으로 한다.

- 1. 채권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금융자산(CB, BW, RCPS, RP, MMF, MMT 포함)
- 2.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
- 3.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위해 공개되는 주식
- 4.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규정된 증권
- 5.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유가증권

## 제 3 조 (투자일임의 범위)

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
- 2. IPO 등 공모 방식으로 계약자산에 편입할 유가증권의 가치분석
- 3. IPO 등 공모 방식으로 계약자산에 편입할 대상 유가증권의 수요예측(수량, 가격, 확약) 참여에 관한 일임
- 4. 계약자산의 인수, 매매구분,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일임
- 5. 투자결과의 평가 및 향후 투자전략에 대한 일임
- 6. 기타 제 1호 내지 제 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

#### 제 4 조 (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)

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
- 2.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
- 3.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
- 4.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제 5 조 (투자일임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)

- 1.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다.
- 2.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3.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 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4. 고객이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5.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투자일임 담당자의 사망,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6.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 시에는 '고객은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7.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(회사의 신의성실의무)

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.

#### 제 7 조 (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)

- 1.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.
- 2.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.
- 3.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.
- 4.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(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)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

#### 제 8 조 (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)

- 1.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.
- 2.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,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.
- 3.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, 리스크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,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
#### 제 9 조 (투자결과 등의 통지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(이하 "투자일임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단, 고객이 고객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수시로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

- 1.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
- 2.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, 매매가격,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
- 3.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, 취득가액, 시가 및 평가손익
- 4.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일임 담당자에 관한 사항
- 5.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
- 6.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#### 제 10 조 (공모주 배정결과의 통지)

회사는 공모주 참여 및 납입 후 최종 배정결과에 대하여 매 건마다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.

#### 제 11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- 1.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- 2.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최소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예고와 사전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3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가.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)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
- 나. 고객이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회(계약한 연도에는 3 회)이상 재무상태, 투자 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

4.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,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,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 12 조 (계약의 유효기간)

- 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2. 회사는 계약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"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"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#### 제 13 조 (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)

- 1.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서 [별첨 1]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.
- 3. 운용보수의 지급은 계산기간의 시작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- 4. 회사가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4 조 (투자실적의 평가 및 수수료 산정 기준)

- 1.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.
- 2. 주식에 있어 배당,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,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,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·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.
- 3. 수수료 지급은 계산 기간내 총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제 15 조 (계약 조건유지 의무)

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계약기간 동안 유지 조건으로서 "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2 ①호 4 항(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조건 중 5 억 원 이상 평잔 유지 의무)"을 성실히 유지 및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.

#### 제 16 조 (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)

계약자산의 운용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.

#### 제 17 조 (통지의무)

- 1.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, 주소와 연락처,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[별첨 1] 수수료 지급 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. 단,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.
- 3.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## 제 18조 (비밀유지의무)

1.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. 2.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,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 19 조 (회사의 금지사항)

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 투자 일임자산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 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고객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2. 고객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3.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4.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, 집합투자자산 또는 신탁자산과 거래하는 행위
- 5.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자산과 거래하는 행위
- 6. 회사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7.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
- 8.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#### 제 19조 (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)
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.

1.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,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
- 2.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
- 3.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. 다만,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, 공개매수의 응모, 유상증자 청약,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.
- 4.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

#### 제 20 조 (계약 만료, 해지 시의 자산형태)

회사와 고객의 계약만료 또는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. 단, 유가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.

#### 제 21 조 (투자실적의 평가)

- 1. 투자수익은 각 종목별 투자금의 회수 시 얻는 금액에서 투자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하며 투자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.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14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
- 2. 주식에 있어 배당,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,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,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.

#### 제 22 조 (자산의 소유권)

- 1.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.
  -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
  - ②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
  - ③ 유상증자의 청약
  - ④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
  -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
  - ⑥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
  - ⑦ 자본시장법 제 5 조 1 항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
- 2. 고객은 회사에 관련 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 23 조 (관련 법규 등의 준용)

- 1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.
- 2.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## 제 24조 (계약위반의 효과)

고객과 회사가 이 계약에 열거한 약정에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대방은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# 제 25 조 (관할법원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고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 제 26 조 (투자일임담당자)

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할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,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과 변경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- 1. 담당자:
- 2. 연락처:
- 3. 우편물 수령처:

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고 객 주 소 :

회 사명:

대 표 이 사 : (인)

회 사 주 소 :

회 사명:

대 표 이 사 : (인)

#### [별첨 1]

##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

#### 제 1 조 (계약기간)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년)

#### 제 2 조 (계약의 내용)

- 1. 계약자산 : 고객이 회사의 투자일임에 의거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금액이 지출된 자산으로 고객과 회사가 상호 투자하기로 합의한 자산
- 2. 유지계약금액:
- 3. 거래증권계좌 :

#### 제 3 조 (일임수수료의 정의)

- 1. 일임 수수료는 [별첨 1]의 제 2 조 1 항에 따라 지출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.
- 1) 일임 수수료
- 2) 기본운용수수료
- 3) 성과수수료
- 4) 공모주 투자의 수익금액은 제세금 및 거래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한다.
- 2. 지급할 일임수수료는 계약기간 동안 제 1 항의 일임수수료의 누적으로 계산하며, 계약기간 동안의 총 일임수수료가 부(-)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할 일임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.
- 3. 정산 기준일 현재 미 매도 주식은 정산하지 아니하나, 계약 만기 후 미 갱신 또는 해지 시에 한하여 미매도주식은 만기일 또는 해지일 종가로 평가하여 정산한다.

#### 제 4 조 (일임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)

1. 기본운용수수료는 각 기에 해당하는 대상기간의 시작시점으로부터 <u>7 영업일 이내</u>에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. 단,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에서의 차감방식이 아닌 별도 납입으로 지급한다.

2. 성과수수료는 각 기에 해당하는 대상기간 말일로부터 <u>7 영업일 이내</u>에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
3. 대상기간은 투자금액 회수일을 기준으로 하며, 일임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각 대상기간 종료일까지의 누적으로 계산한다.

4. 계약이 연장된 경우의 대상기간 및 일임수수료는 [별첨 1] 제 3 조, 제 4 조에 준하여 계산한다.

5.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.

가. 기본수수료: 각 기의 미경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그 해당금액을 환급한다.

나. 성과수수료: 계약 유지기간 중의 수익금을 [별첨 1] 제 3 조에 따라 정산한다.

#### 제 5 조 (고객에 대한 통지장소)

주소:

담당자명:

전화:

팩스: